

2024년도 하반기 예금보험공사 신입직원 채용안내

1 채용예정 인원 : 30명 이내

직원 구분	채용분야	채용규모	직무기술서
종합직원	금융일반(경영)	12명	첨부 참고
	금융일반(경제)	10명	
	IT	6명	
사무·서무직원	고졸(일반행정)	2명	
합 계		30명 이내	

2 지원 자격

구분	지원자격
공 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① 학력, 연령, 전공 제한 없음(단, 연령의 경우 만 60세 미만인자)② 군필자('24. 12. 27. 이전 전역이 가능한 자) 또는 면제자 ※ 고졸(일반행정) 분야의 경우 해당하지 않음③ 공사 내규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④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⑤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1조 제1항에 따른 공사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⑥ 채용 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
고 졸 (일반행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□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2025년초 특성화고(마이스터고 등도 포함*) 졸업예정자 *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포털 사이트(www.hifive.go.kr)에 등록된 학교 기준②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(학교별 1명*) * 학교별 1명만 추천 가능하며, 2명 이상 추천 시 해당 학교 지원자 모두 불합격 처리

※ 공사 「인사관리규정」 상 채용금지자
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2. 전직 중 불미한 소행 또는 근무 태만으로 인하여 해직된 자
3. 「병역법」 제7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
4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5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[참고] 관련 법령

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[전문개정 2008. 3. 28.]

[헌법불합치, 2020헌마1181, 2022.11.24, 국가공무원법(2018. 10. 16.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)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(2017. 10. 24.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) 제17조 제2호 가운데 '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'에 관한 부분 및 군인사법(2019. 1. 15. 법률 제16224호로 개정된 것) 제10조 제2항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(2017. 10. 24.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) 제17조 제2호 가운데 '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'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. 위 법률조항들은 2024. 5. 31.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.]

[헌법불합치, 2020헌마1605, 2022헌마1276(병합), 2023.6.29, 국가공무원법(2018. 10. 16.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)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2014. 1. 21.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, 2020. 6. 2.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1조 제5항 가운데 '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'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(2018. 10. 16.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)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2014. 1. 21.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, 2020. 6. 2.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1조 제5항 가운데 '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'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. 위 법률조항들은 2024. 5. 31.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.]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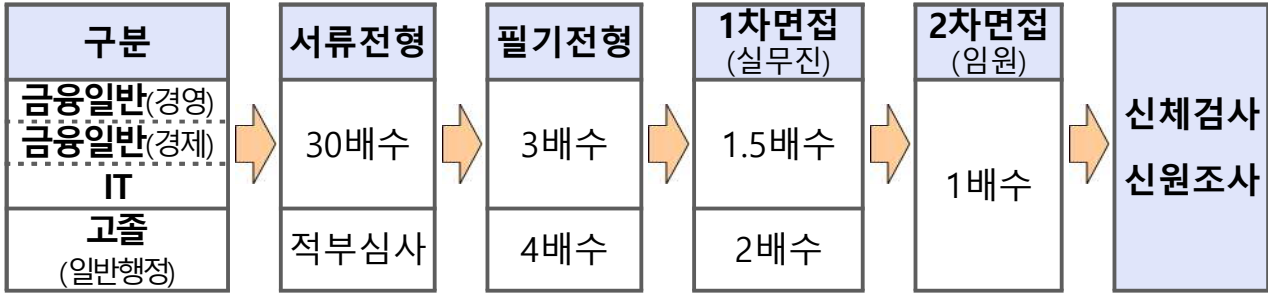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.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"비위면직자등"이라 한다)은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1. 공공기관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1조(가족 채용 제한) ① 공공기관(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·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「상법」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.

1. 소속 고위공직자
2.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
3.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
4.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

3 채용 절차

가. 채용절차 개요



나. 입사지원서 접수

□ 접수기간 : 2024.9.10.(화) ~ 2024.9.24.(화) 17:00

□ 접수방법 :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(www.kdic.or.kr)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

※ 개별방문, 우편, e-mail 등 기타접수는 불가

다. 서류전형

□ 금융일반(경영)·금융일반(경제)·IT 분야는 입사지원서를 바탕으로 채용분야별 교육사항, 자격사항, 경력사항에 대한 NCS기반 직무 능력 검증 실시

○ 교육사항, 자격사항, 경력사항의 합산점수 기준으로 고득점자(우대사항 감안) 순으로 선발

○ 고졸(일반행정) 분야의 경우 지원자격 미충족,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자 등을 제외한 지원자 전원에게 필기전형 응시기회를 부여

라. 필기전형

□ 채용분야별 응시과목

채용분야	구 분	시험과목	시간	문항수 (배점)	출제유형	
금융일반(경영)	직업기초능력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	45분	45문항 (45점)	객관식	
금융일반(경제)	직무수행 능력평가	공통	120분	46문항 (255점)	진위형 객관식 주관식 논술	
IT		금융일반 (경영)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융시사상식^{주)} 경영학
		금융일반 (경제)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제학
		IT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산학
고졸(일반행정)	직업기초능력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수리능력 	80분	80문항 (100점)	객관식	

주) 공사 직무지식 관련 문항 포함. 진위형으로 출제

○ 직무수행능력평가(직무관련 전공지식) 출제범위

채용분야	출제범위
금융일반(경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영학 : 재무관리, 회계학^{주)}, 금융기관론을 포함한 경영학 일반
금융일반(경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제학 : 미시경제학, 거시경제학, 계량경제학, 화폐금융론
IT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산학 : 소프트웨어공학, 정보통신, 프로그래밍, 데이터베이스, 정보 보호를 포함한 전산학 일반

주) 국제회계기준(IFRS) 적용, 원가·관리회계 제외

- (금융일반(경영)·금융일반(경제)·IT 분야) 직업기초능력평가, 직무수행능력평가 합산점수 기준으로 고득점자(우대사항 감안) 순으로 선발
- (고졸(일반행정) 분야) 직업기초능력평가 고득점자(우대사항 감안) 순으로 선발

※ 필기전형 합격자 대상 온라인 방식으로 인성검사 실시

마. 면접전형

□ 1차 면접(실무진 면접)

- 지원 분야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, 공사 직원으로서의 품위 및 태도 등을 바탕으로 직무수행능력 및 인성 등 평가
- 심층면접, 발표면접, 토론면접으로 구성·진행하며, IT분야 지원자의 경우 당일 코딩테스트^{주)}로 발표면접 대체

주) 프로그래밍(C, C++, JAVA, Python) 및 SQL(Oracle)

- 고졸(일반행정) 분야는 심층면접만 진행
- 1차 면접전형 결과(75%) 및 필기전형 결과(25%)를 합산하여 고득점자(우대사항 감안) 순 선발

□ 2차 면접

- 지원동기 및 입사의지, 공사 직원으로서의 품위 및 태도, 지원직무에 대한 능력 등을 바탕으로 종합평가
- 2차 면접전형 결과 고득점자(우대사항 감안) 순 선발

바. 전형단계별 평가방법

□ 금융일반(경영), 금융일반(경제), IT 분야

구분	전형단계	평가기준	배점	선발배수
1차	서류전형	-직무관련 교육·자격·경력 -직무능력소개서 및 자기소개서	100 적·부 ^{주)}	30배수
2차	필기전형	-NCS 직업기초능력평가 -직무수행능력평가	45 255	3배수
3차	1차 면접전형	-1차 면접전형 결과 -필기전형 결과	75 25	1.5배수
4차	2차 면접전형	-2차 면접전형 결과	100	1배수
최종	신체검사·신원조사	-채용결격사유 확인	적·부	-

주) 회사명 오기재, 자기소개서 항목(직무능력소개서 포함) 미입력·분량미달(1개 항목이라도 허용 글자 수의 50% 미만 작성 항목이 있을 경우), 무의미한 동일어구 반복 등 불성실 기재 시 불합격 처리

□ 고졸(일반행정) 분야

구분	전형단계	평가기준	배점	선발배수
1차	서류전형	■ 직무능력소개서 및 자기소개서	적·부 ^{주)}	-
2차	필기전형	■ NCS 직업기초능력평가	100	4배수
3차	1차 면접전형	■ 1차 면접전형 결과 - 필기전형 결과	75 25	2배수
4차	2차 면접전형	■ 2차 면접전형 결과	100	1배수
최종	신체검사·신원조사	■ 채용결격사유 확인	적·부	-

주) 회사명 오기재, 자기소개서 항목(직무능력소개서 포함) 미입력·분량미달(1개 항목이라도 허용 글자 수의 50% 미만 작성 항목이 있을 경우), 무의미한 동일어구 반복 등 불성실 기재 시 불합격 처리

사. 동점자 처리 기준

□ 금융일반(경영), 금융일반(경제), IT 분야

구분	전형단계	동점자 처리 기준(고득점 순)
1차	서류전형	보훈 관련 법령상 취업지원 대상자 → 교육사항 → 자격사항 → 경력사항 → 우대가점 → 비수도권 지역인재 → 이후 동점자 전원 합격
2차	필기전형	보훈 관련 법령상 취업지원 대상자 → 우대가점 → 직무수행능력평가 → 직업기초능력평가 → 이후 동점자 전원 합격
3차	1차 면접전형	보훈 관련 법령상 취업지원 대상자 → 우대가점 → 심층면접 → 발표면접(IT분야는 코딩테스트) → 토론면접 → 이후 동점자 전원 합격
4차	2차 면접전형*	보훈 관련 법령상 취업지원 대상자 → 우대가점 → 1차 면접전형 → 필기전형 → 서류전형

* 동 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 발생 시 각 전형별(1차 면접전형→필기전형→서류전형) 동점자 처리 기준까지 적용 후 선발

□ 고졸(일반행정)

구분	전형단계	동점자 처리 기준(고득점 순)
1차	필기전형	보훈 관련 법령상 취업지원 대상자 → 우대가점 → 의사소통능력 → 문제해결능력 → 정보능력 → 수리능력 → 이후 동점자 전원 합격
2차	1차 면접전형	보훈 관련 법령상 취업지원 대상자 → 우대가점 → 심층면접 → 이후 동점자 전원 합격
3차	2차 면접전형*	보훈 관련 법령상 취업지원 대상자 → 우대가점 → 1차 면접전형 → 필기전형

* 동 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 발생 시 각 전형별(1차 면접전형→필기전형) 동점자 처리 기준까지 적용 후 선발

아. 채용일정(안)

구분	일정	비고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▪ '24. 10. 11.(금)	
필기전형	▪ '24. 10. 19.(토)	고사장 : 서울
필기전형 합격자 발표	▪ '24. 11. 06.(수)	
1·2차 면접전형	▪ '24. 11월 중	
신체검사·신원조사	▪ '24. 12월 중	
입사	▪ '24. 12. 27.(금)	

※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전형단계별 세부사항은 합격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

자. 증빙서류 제출

※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
□ 고졸(일반행정) 분야 지원자

○ 학교장 추천서*를 입사지원 시 온라인 제출

* 별도 양식은 없으며, 추천 대상 학생의 인적사항(개인식별정보, 졸업예정일 포함) 및 구체적인 추천사유가 기재되고 학교장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. 지원자격 확인용으로만 활용하며 평가위원에게는 제공하지 않음.

□ 서류전형 합격자 (필기전형 시 본인확인 용도)

○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사진 업로드 및 생년월일 입력

□ 필기전형 합격자 (해당자에 한함)

대상자	제출서류
보훈 관련 법령 상의 취업지원 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
장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장애인 증명서 ※ 중증장애인의 경우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추가 제출
의사상자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의사상자 증명서 ※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
수급자 및 수급자의 자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※ 본인의 명의로 발급이 불가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추가 제출
한부모가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한부모가족 증명서(본인명의) ※ 「한부모가족증명서」 “1. 성명” 란에 본인 이름이 기재되어 발급 가능해야 함
북한이탈주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원본 1부.
다문화가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및 다음 서류 중 필요 증빙서류 각 1부. -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(국적 포함) 원본 - 부모 또는 배우자(귀화 허가를 받은 자) 명의의 기본증명서(혼인한 외국인의 前 국적 표시 必) 원본 -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(결혼이민자) 원본
자립준비청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자립수당수급자확인서 원본, 보호종료 확인서 원본, 보호시설 퇴소확인서 원본 중 택일 1부.
비수도권 지역인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-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추가 제출 - 고졸(일반행정) 분야 지원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제출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자격증* 보유자</p> <p>* 변호사, 회계사, CFA(lv3), 보험계리사, 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자격증 사본

□ 2차 면접전형 합격자

- 입사지원서 기재내용 및 지원자격 사항 증빙서류 등*(기제출분 제외)

* 세부내용은 합격자에 한해 추후 안내 예정

분야	대상자
공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최종학교 졸업(예정)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- 대학원 졸업(예정)자는 대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- 편입자는 편입 전 대학 재적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
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남성) 주민등록초본(병역사항 기재 필요)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1부 ■ (자격보유자) 자격사항 증명서 1부 ■ (경력보유자) 경력(재직) 증명서 1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이나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) - 지원자 인적사항, 입사일, 담당업무, 재직여부, 퇴직(예정일), 징계사항 유무 (징계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종류, 일자 및 사유 기재)가 모두 포함된 증명서 제출

차.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등

- 신체검사는 「건강검진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의 검사결과를 활용할 예정(관련 비용 공사 부담)이며,

- 입사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 실시한 국가건강검진 결과*가 있을 경우 대체 가능

*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「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」 발급받아 제출

카. 최종합격자 선정 및 입사

-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(입사포기서 제출) 시, 차순위 예비합격자 채용 가능*

* 이 경우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채용공고문에 따른 입사예정일과 상이할 수 있음

※ 입사포기서 미제출 또는 제출 지연 시 조치

- 입사 포기 시 입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나, 미제출 또는 제출 지연으로 차순위 예비합격자에게 발생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의 경우 입사포기서 없이 입사포기 처리 후 예비순번에 따라 입사기회 부여
 - 입사 일시와 장소가 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불참하거나 입사포기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입사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, 입사 당일 집합시간으로부터 9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입사 포기 처리
 - 입사포기서 이외 전자문서(e-mail, 문자 등) 형태로 입사포기의사를 고지한 경우

4 우대 사항

가. 가점우대

- ※ 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된 증명서에 한해 우대사항 적용 예정
- ※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이 복수인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가점만 반영
- ※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고졸(일반행정) 분야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미적용(단, 동점자 처리 시 우대)

구 분	전형별 부여 가점(만점 기준)		
	서류	필기	면접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의한 장애인	15%	15%	15%(1차) 10%(2차)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보훈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	5% 또는 10%	5% 또는 10%	5% 또는 10%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(본인 또는 자녀)	5%	5%	5%
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의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	5%	5%	5%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의사상자 등 ¹⁾	3% 또는 5%	3% 또는 5%	3% 또는 5%
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보호대상자	3%	3%	-
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	3%	3%	-
「아동복지법」에 의한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²⁾	3%	3%	-
자격증(변호사, 회계사, CFA(Iv3) ³⁾ , 보험계리사, 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)	-	3%	-
예금보험공사 인턴(우수인턴) 수료자 ⁴⁾	3%(수료자) 면제(우수인턴)	-	-
예금보험공사 대학(원)생 우수논문 공모전 당선자	면제	-	-
비수도권 지역인재 ⁵⁾	-	-	3%(2차면접만)

- 1) (5%)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, 의사상자 관련 법령상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자 (3%) 의사상자 관련 법령상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
- 2) 아동복지시설 퇴소(또는 가정위탁보호조치 종료)한지 5년 이내인 자
※ '19.9.10. 이후 퇴소 또는 보호조치 종료
- 3) 합격통지서 사본(이메일 출력) 제출 가능
※ 자격증은 CFA(Iv3)를 제외하고 국내자격증에 한함(최종 합격증 가능)
- 4) 채용 공고일 기준 직전 2년 이내('22.9.10. 이후 수료) 고용계약서 상 근무종료일까지 중도퇴사하지 않고 근무한 청년인턴·대학생인턴·일경험인턴에 한함(단, '24년 이후 일경험인턴 수료자부터는 근무태도평가가 양호한 자에 한해 가점(3%) 부여)
- 5)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학교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자로 상세 사항 '별첨1' 참고

나. 비수도권 지역인재 우대

- 서류·필기·1차 면접전형에서 비수도권 지역인재 합격자가 채용 분야별 합격기준 인원(35%)에 미달할 경우, 일정 기준 이상 득점한 지역인재 추가합격 처리
- ※ 채용 시 우대를 위하여 관련 증명서 발급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5 기타 공지사항

- 합격자 발표 및 전형일시 등 구체적인 채용일정은 각 전형단계별로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(www.kdic.or.kr)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.
- 채용전형 및 일정 등은 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(변경 시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예정)
-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에 다수의 지원자가 동시에 접속할 경우 지원서 작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마감일 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- 최종합격자는 채용 직후 일정기간 수습근무기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.
- 병역의무 복무기간과 학위 취득기간(석사 이상)의 일부는 공사 내규에 따라 연봉 산정에 반영합니다.
-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,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 규모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.
- 지원자격은 지원서 접수마감일('24.9.24.) 기준, 우대사항은 채용공고일('24.9.10.) 이후 기준으로 합니다.
- 입사지원서(자기소개서 및 직무능력소개서 포함)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서류와 대조하여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지원서 작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입사지원서(자기소개서 및 직무능력소개서 포함) 기재 착오 또는 누락,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이므로,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입사지원서(자기소개서 및 직무능력소개서 포함) 불성실 기재자(자기소개서 등 입력항목 누락, 베끼기, 짜깁기 등)의 경우 서류전형 등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작성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본 채용전형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됩니다. 따라서 채용 소과정에서 이름, 학교명, 가족관계 등 직·간접적으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노출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(특히, 자기소개서 등 작성 시 이름, 학교명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)
- 최종 합격되지 않은 경우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'24.12.27.로부터 14일 이내 '별첨2'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insa@kdic.or.kr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채용시험에 대한 불합격자로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후 15일 이내에 '별첨3'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insa@kdic.or.kr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부정합격자(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정행위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,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)에 대해서는 발견 시 임용 전에는 합격이 취소되며, 입사 이후에는 입사가 취소됩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예금보험공사 인사지원부 인사팀(☎ 02-758-0115, 0133, 015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별첨 1

비수도권 지역인재의 범위

□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
-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(지방대학)를 졸업(예정)·중퇴한 자 또는 재학·휴학 중인 자

□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

가.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

- (1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'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학교'
- (2)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

* (예시) 고려대 세종캠퍼스, 동국대 경주캠퍼스,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

※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인지 여부는 해당학교에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예 시

-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: 지방대학에 해당함
-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
-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
-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가 아님

- (3)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·경기·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
- (4)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

나.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(예시)

- (1)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
서울·경기·인천 지역대학
- (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
- (3) 사이버대학, 디지털 대학 등 「평생교육법」상의 평생교육시설
- (4)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

□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
- (1)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
- (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- (3) 대학원 및 사이버·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,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,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
별첨 2**채용서류 반환청구서**

-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 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예금보험공사 사장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별첨 3**이의신청서 양식****채용 이의신청서**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이의신청자	성명	수험번호
	생년월일	E-mail
	연락처	
이의신청 내용		

본인은 위 기재내용과 같이 이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예금보험공사 사장 귀하

공지사항

1. 채용결과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이의신청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,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상의 e-mail 앞으로 회신을 드릴 예정입니다.
3. 채용전형과 무관한 단순문의 및 질의사항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회신하지 않습니다.